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5-107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9. 2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의3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 일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다.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2. 제안 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,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
- 이에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 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」 제7조의3

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
제2조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윤리특별위원회"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

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